

① 개정 개요

※ 「법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('25.5.1.)」 후속조치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<input type="radio"/> 빈집 철거 후 <u>3년간</u> 별도합산 적용 <input type="radio"/> 세부담 상한 계산 시 철거 전 주택(빈집)에 과세된 세액을 <u>5년간</u> 활용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용·공공용 사용토지의 세부담 완화 기간 확대 <input type="radio"/> 국가·지자체와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·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<u>그 기간 전체</u> 별도합산 적용 <input type="radio"/> 국가·지자체와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·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<u>그 기간 전체</u> 적용

□ 개정 내용

- 국가·지자체 등과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·공공용으로 활용 시
 - 세부담상한 설정 시 철거전 주택세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기간을 공용·공공용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
 - 별도합산과세 기간도 공용·공공용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

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

|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3조(철거·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10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15조(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)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